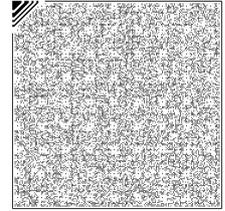




정령韓 보건복지부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의료기관,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 
(중앙방역대책본부-10032호, 2023.8.28.)
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60호(2023.8.30.)

2.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,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, '23.8.31.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문의)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
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: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(질병관리청)

- 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.
- 2.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.
- 3. (중앙방역대책본부)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부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지사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3.8.30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4224 (2023. 8. 30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[shsong98@korea.kr](mailto:shsong98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